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142

발의연월일: 2022. 4. 7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진표·김정호

이용빈 • 이원욱 • 정청래

김철민 · 홍정민 · 박영순

윤영덕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부터 5년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'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'을 수립·시행하고 있으며,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, 학교폭력 예방교 육의 교과연계 강화, 피해학생의 지원기관 확대, 가해학생에 대한 특 별교육 내실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
그러나 학교폭력은 온·오프라인에서 점점 복잡·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,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바,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및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,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지원

대책을 마련하며,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는 것임(안 제11조의4 신설 및 제17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3항(종전의 제12항) 중 "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"를 "구성,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,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"로 한다.

-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1조의4(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지원)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사(이하 "책임교사"라 한다)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 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 및 민 사·형사 소송 등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하여 민사·형사 소송의 제기를 당한 경우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·형사 소송 등에 따른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제3항 전단 중 "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"를 "책임교사"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을 찾으려는 시도,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
- 2.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
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임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하여 민사·형사 소송의 제기를 당한 교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①	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①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
<u>&lt;신 설&gt;</u>	⑩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	
	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	
	및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한 교	
	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	
	야 한다.	
<u>⑩</u>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	<u>13</u>	
담부서의 <u>구성과 제8항에 따라</u>	<u>구성,</u> 제8항에 따라 <u>실</u>	
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	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, 제9	
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	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	
<u>설치에</u>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	제1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	
령으로 정한다.		
<u>&lt;신 설&gt;</u>	제11조의4(학교폭력업무 담당자	
	의 지원) ① 학교의 장은 학교	
	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사(이	
	하 "책임교사"라 한다)의 활동	
	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	
	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	
	<u>하여야 한다.</u>	
	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를	
	담당하는 교직원의 활동을 지	

제14조(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 제14조(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 담기구 구성) ①·② (생 략)

③ 학교의 장은 교감, 전문상담 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 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,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 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(이하 "전담기구"라 한다)를 구 성한다.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

원하기 위하여 「교원의 지위
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
특별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법
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
관련한 상담 및 민사・형사 소
송 등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
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
원이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하
여 민사ㆍ형사 소송의 제기를
당한 경우 교직원의 고의나 중
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
사건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 형사
소송 등에 따른 수임료를 지원
할 수 있다.

담기구 구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(3)	 	
	 <u>책</u>	<u>임교사</u> -

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--. 어야 한다.

④ ~ ⑨ (생 략)

- 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 (생략)
  -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· 고발 학생 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 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 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② (생 략) 제19조(학교의 장의 의무) ① ~ 제19조(학교의 장의 의무) ① ~ ③ (생략) <신 설>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
(현행과 같음)
②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<u>하는</u>

- 1. 피해학생이나 신고 · 고발 학 생을 찾으려는 시도, 협박 또 는 보복 행위일 경우
- 2.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- ③ ~ ② (현행과 같음)
- - ③ (현행과 같음)
  -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

하는등학교폭력조기발견및대처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.